

변경대비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명칭	종류 (클래스)	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 자신탁1호(주식) (펀드코드: 56287)	A	수수료선취 오프라인	BC476
	A-E	수수료선취 온라인	BC477
	A-G	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	BP120
	C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	A5196
	C-E	수수료미징구 온라인	AS481
	C-G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	BP121
	C-W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	BC479
	C-F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	A5197
	C-I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	AA699
	S	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	AP750
	C-R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	EB763
	C-Re	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	EB764

2. 주요 변경 내용:

① 투자설명서

- 퇴직연금 클래스(C-R, C-Re) 신설

② 간이투자설명서

- 퇴직연금 클래스(C-R, C-Re) 신설

③ 신탁계약서

- 퇴직연금 클래스(C-R, C-Re) 신설

3. 변경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신탁계약서

4. 변경시행일: 2024.05.10

[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금융투자협 회코드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종류C-R(EB763), 종류C-Re(EB764)
제1장 총칙 제3조(집합 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 칭 등)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11. 종류C-R 수익증권: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 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12. 종류C-Re 수익증권: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 연금가입자에 한하여 판매회사 의 전자매체(온라인)을 통하여 가입한자에게 발행되며,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 투자증권
제2장 수익 증권 등 제10조(수 익증권의 발행 및 전 자등록)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11. 종류C-R 수익증권 12. 종류C-Re 수익증권
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(보 수)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11. 종류C-R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6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 12. 종류C-R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6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

			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
제10장 보 칙 제52조(수 익증권의 통장거래)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 저축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 다.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 저축약관(C- R, C-Re 클래스의 경우에는 '연 금지축계좌설정약관')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부칙	아니오	-	<신설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 한다.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 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	
과세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종류 C-R, 종류C-Re수익증권 가입자)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집합투자기 구의 종류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퇴직연금(R):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C-R(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 직연금): EB763 C-Re(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 직연금): EB764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C-R(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 직연금): EB763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C-Re(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 직연금): EB764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중 온라 인 전용 투자자
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2024.05 퇴직연금 클래스(C-R, C-Re) 신 설
6. 집합투자 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퇴직연금(R):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 가. 투자자에	아니오	퇴직연금 클 래스(C-R, C- Re) 신설	<신설>	C-R(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 직연금) C-Re(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

<p>계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				<p>직연금)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아니오</p>	<p>퇴직연금 클래스(C-R, C-Re) 신설</p>	<p><신설></p>	<p>C-R(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) 집합투자업자 보수: 0.7600 판매회사 보수: 0.5000 신탁업자 보수: 0.03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: 0.0140</p> <p>C-Re(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) 집합투자업자 보수: 0.7600 판매회사 보수: 0.2500 신탁업자 보수: 0.03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: 0.0140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</p>	<p>아니오</p>	<p>퇴직연금 클래스(C-R, C-Re) 신설</p>	<p><신설></p>	<p>(4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(종류 C-R, 종류 C-Re 수익증권 가입자)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p> <p>①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 중 <u>연금저축계좌</u>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하고, <u>퇴직연금계좌(IRP)</u>에 납입한 금액 중 연 9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하되, <u>연금저축계좌</u> 세액공제 한도액 600만원을 포함하여 <u>퇴직연금계좌(IRP)</u>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최대 900만원까지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</p>

	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1037 112 1179 255">구분</th> <th data-bbox="1179 112 1310 255">연금저축계좌</th> <th data-bbox="1310 112 1447 255">퇴직연금계좌(IRP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1037 255 1179 533" rowspan="2">세액공제 한도</td> <td data-bbox="1179 255 1310 439">연 600만원 공제율: 13.2%</td> <td data-bbox="1310 255 1447 439">연 900만원 공제율: 13.2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data-bbox="1179 439 1447 53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 <p>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</p> <p>③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또한 연금 수령 시 <u>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은 연간 1,5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</u> 함. 연금소득이 1,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p>	구분	연금저축계좌	퇴직연금계좌(IRP)	세액공제 한도	연 600만원 공제율: 13.2%	연 900만원 공제율: 13.2%	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	
구분	연금저축계좌	퇴직연금계좌(IRP)										
세액공제 한도	연 600만원 공제율: 13.2%	연 900만원 공제율: 13.2%										
	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											

			<p>※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「소득세법」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의 '연금세제안내'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<u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.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, 중도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 <p><u>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/u></p>
--	--	--	--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	
과세	아니오	퇴직연금 클래스(C-R, C-Re) 신설	<신설>	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종류 C-R, 종류C-Re수익증권 가입자)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아니오	퇴직연금 클래스(C-R, C-Re) 신설	<신설>	퇴직연금(R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